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1일, 김상훈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4.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상훈 의원)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2조 및 제113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가. 선박 운항자 등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근거 신설

개정안은 ①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약물·환각물질의 영향 하에 운항을 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등 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게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운항은 음주운항만큼 해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금지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약물운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측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짐.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①대상물질, ②측정 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그 조정이 필요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약물운항에 대한 측정 불응 및 재위반 시 벌칙 등 규정

개정안은 약물운항에 대한 측정요구 불응과 관련하여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약물운항 금지 규정 및 측정요구 불응 규정 재위반 시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약물운항 금지 및 측정요구 등에 대

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약물운항을 근절하고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법무부는 개정안은 ①‘약물운항’ 후 다시 ‘약물운항’을 한 자나, ‘약물운항 시 측정 불응’ 후 다시 ‘약물운항 시 측정 불응’한 자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약물운항’ 후 재차 ‘약물운항 시 측정 불응’한 자 및 ‘약물운항 시 측정 불응’ 후 재차 ‘약물운항’한 자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필요하다는 의견과 ②개정안에서는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회의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문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